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 · 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4-219-622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4. 9. 25.

주 문

- 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가. 과 태 료 : 7,200,000원
 - 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 - 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- 2.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.

이 유

I. 기초 사실

웹()·앱()으로 여행상품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심인은「舊 개인정보 보호법」1)(이하'舊 보호법')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(명)

Ⅱ. 사실조사 결과

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(privacy.go.kr)에 유출 신고('23. 4. 17.)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('23. 11. 7. ~ '24. 4. 17.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2. 행위 사실

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여행상품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, '24. 4. 12.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¹⁾ 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, 2020. 8. 5. 시행

< 개인정보 수집 현황 >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

나.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

'23. 4. 17. 10:00 경 피심인이 운영중인 앱에서 진행한 여행상품 이벤트 직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자 오류*가 발생하여 일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정보로 중복 로그인 처리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.

- * 이용자가 로그인 하는 경우 웹 서버에서 세션 확인을 위해 세션키()를 생성 후 이용자 ID와 매칭하나, 이벤트 직후 이용자 접속이 크게 증가하자 동일한 세션키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매칭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첫 번째로 세션키를 받은 이용자의 정보로 다른 이용자가 중복 로그인 처리되었음
- 1) (유출 규모 및 항목) 이용자의 명의 개인정보*가 유출되었다.
- * 이름, 핸드폰 번호

2) 유출 인지 및 대응

일 시		유출 인지 및 대용 내용
'23. 4. 17.	10:00	피심인 여행상품 이벤트 시작
'23. 4. 17.	10:06	고객센터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보인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<u>개인정보 유출 인지</u>
'23. 4. 17.	10:55	이벤트 중지, 세션키 중복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원인분석 및 해당 이용자 로그아웃 처리
'23. 4. 17.	11:54	세션키 중복 전달 방지를 위한 소스코드 변경
'23. 4. 17.	17:00	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 <u>유출신고</u>
'23. 5. 15.	15:47	개인정보 <u>유출 통지</u> (이메일)
'24. 4. 23.	11:01	개인정보 유출 추가 통지 (이메일)

3. 개인정보의 취급.운영 관련 사실관계

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이 여행상품 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앱 접속자 증가에 따른 세션 중복 오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유출방지 조 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나.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'23. 4. 17.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경과한 '23. 5. 15., '24. 4. 23.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사실이 있다.

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4. 4. 19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4. 5. 7.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관련법 규정

가. 舊 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²)(이하'舊 시행령')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"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'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마목)'등을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²⁾ 대통령령 제32813호, 2022. 7. 19. 일부개정, 2020. 10. 20. 시행

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"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·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3)(이하'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') 제4조제9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(제1호),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(제2호),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(제3호)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(제4호),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(제5호)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의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3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·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·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·신고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³⁾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-3호, 2021. 9. 15., 시행

2. 위법성 판단

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[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]

피심인이 '21. 6. 23.* ~ '23. 4. 17. 동안 여행상품 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앱접속자 증가에 따른 세션 중복 오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,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,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.

* 문제가 된 소스코드 변경 이력은 피심인이 형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한 '21.6.23.부터 확인이 가능하였음

나.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

[舊 보호법 제39조의4(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)]

피심인이 '23. 4. 17.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'23. 5. 15., '24. 4. 23.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 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위반행위	법률	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		
안전조치의무 위반	舊 보호법 §29	舊 시행령 §48의2①	・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(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§4⑨)		
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	舊 보호법 §39의4①	舊 시행령 §48조의4	•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행위		

Ⅳ. 처분 및 결정

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및 제39조의4(개인정보의 유출등의

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 6호·제12호의3, 舊 시행령 제63조, 舊 시행령 [별표2] '과태료의 부과기준' 및 '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4)'(이하'舊 과태료 부과지침')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가. 기준금액

舊 시행령 제63조와 [별표2] '과태료의 부과기준'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.

< 舊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. 개별기준 >

	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	1회	2회	3회 이상
자.	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 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6호	600	1,200	2,400
도.	법 제39조의4제1항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·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	법 제75조	600	1,200	2,400

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1) 과태료의 가중

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,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'[별표2] 과태료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

⁴⁾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, 2023. 3. 8. 시행

정되는 경우)'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' 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 및 같은 법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▲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%를 각각 가중한다.

※ 위반기간 : §29('21.6.23. ~ '23.4.17.), §39의4①('23.4.17. ~ '24.4.23.)

2) 과태료의 감경

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,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'[별표1] 과 태료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'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은 ▲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(50% 이내), ▲조사에 협조한 경우(40% 이내)에 해당하여 최대 감경 범위인 기준금액의 50%를 각각 감경한다.

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및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안전조치의무 위반 (접근통제)	600만 원	60만원	300만원	360만원
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(통지 지연)	600만 원	60만원	300만원	360만원
	720만원			

2. 결과 공표

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「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」 (2020. 11. 18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) 제2조(공표요건)에 따라,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'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(제5호)'에 해당하므로, 피심인이 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다만, 개정된「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(2023. 10. 11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)」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	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							
	개인정보보호법	성 위반에 따라	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	를 아래와 같	이 공표합니다.			
순분	위반행위를 한 자	위	반행위의 내용	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				
	명칭	위반조항 위반내용		처분일자	처분내용			
1		舊 보호법* 제29조	안전조치의무 위반 (접근통제)	2024. 9. 25.	과태료 360만 원			

* 舊 보호법 : 2020. 8. 5. 시행, 법률 제16930호

2024년 9월 25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V. 결론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제39조의4제1항(개인정보 유출등의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6호·제12호의3, 제66조(결과의 공표)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,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 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4년 9월 25일

- 위원장 김진욱 (서명)
- 위 원 김진환 (서명)
- 위 원 박상희 (서명)